

### 3. 연가보상비(영 제18조의5)

#### 가. 지급대상

○ 1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1) 지급제외자

가)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방학기간 중에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완화된 근무여건을 갖지 않는 공립대학교 조교는 지급대상에 포함

나)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다)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라)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마)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퇴직된 사람

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시장·군수·구청장 등)

사) 영 제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 국외파견공무원이 국내에 복귀하여 근무하게 된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

##### 2)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운영

연가활성화를 위해 6월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12월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6월30일 기준 연가보  
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대상자 지정은 아래를 참고하여 각 기관 자  
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 6월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순서(예시) 〉

- ① 6월30일 지급기준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가 10일 미만인 자
- ② 부서장 성과목표 연가사용 활성화 지표 일수와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5일을 합산한 것보다 총 연가일수가 적은 자
- ③ 6월30일 지급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근거해 파견근무중인 자
- ④ 하반기(7.1.~12.31.)중 퇴직 예정자
- ⑤ 하반기(7.1.~12.31.)중 휴직 예정자
- ⑥ 본인이 예외대상자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 ⑦ 그 밖에 6월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인해 연가보상비 정산·환수  
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나. 지급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 다. 지급액

- 예산의 범위안(20일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 1) 아래 2)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액

가) 6월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을 선택한 기관의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

나) 12월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31일 현재 해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가)에 의해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

### 〈 연가보상비 〉

- 6월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 12월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6월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 12월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7월에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일) 미만일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환수하되, 환수금액 계산은 12월31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을 따른다.

(예) 7월 보수지급일에 연가보상비를 5일분 지급받고 12월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3일인 경우 환수금액 : (12월31일 기준 월봉급액 86%×1/30×3일) - 6월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 2)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액

가) 6월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

나) 7월1일 이후 12월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1) 6월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동일 방법(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으로 지급

(2) 7월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 - 6월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 3) 월봉급액 계산방법

- 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한다.
- 나)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중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 중 기본 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제5장-VI-4-가' 참조>은 84%)로 한다.
- 다) 연도 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라) 해당 연도 중 승진·강임·전직·승급 등으로 직급(계급) 및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

### 4)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text{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text{미사용연가일수} \times \frac{12\text{개월} - \text{제외기간(개월)}}{12\text{개월}}$$

- 가) 미사용연가일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말하며,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란 같은 규정 제18조(연가일수) 및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따라 계산된 기간으로서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결근,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인한 공제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를 말하며, 연가일수 계산시 공제된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나) 제외기간은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각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한다.

- (예) · 퇴직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연도 중 임용자(재직기간 1년 미만인 신규채용자는 제외)의 경우 미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공로퇴직연수기간
  - 영19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 영 제3조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30일 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휴직, 사병으로 군입대시 입대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의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 —

○ '15.12.1일자 재직기간이 6년이상이었던 공무원이 퇴직 후 '16.7.1일자 신규 임용된 후 1개월간 교육파견을 실시하고 연가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가보상일수(법정연가일수는 21일)

- 미사용연가일수 :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1일이나 20일만 반영
- 제외기간 : 교육파견기간 1월 + 연도중 임용자의 미 근무기간 6월

연가보상일수 = 20일(미사용연가일수) ×  $\frac{12\text{개월} - 7\text{개월(제외기간)}}{12\text{개월}}$  = 8.3일

⇒ 절상하여 9일분 보상(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 둘째자리이하 절사)

## 라. 지급방법

- 연도 중 퇴직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가잔여일수를 월할계산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 마.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 1) 지급기관 : 지급기준일 현재의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
- 2) 지급시기 : 상반기는 7월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하반기는 12월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 바. 행정사항

- 각 부서의 장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로부터 15일전까지 복무관리상황을 보수지급관서의 장 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연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 통보하여야 한다.

### 예시

- 재직기간이 9개월인 신규공무원이 6.30일까지 연가를 1일 사용하고 12.31.까지 잔여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법정연가일수는 6일)
  - 잔여연가일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보상받을 연가보상일수가 없음
-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6.30일까지 연가 10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2월31일까지 추가로 5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15.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16.8.1로 호봉승급하여 '16.12.31.기준 7급 11호봉임)
  - 7월 연가보상비 지급 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350,360원( $2,444,0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5 = 350,360\text{원}$ )을 지급함
  - 12월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 6일(21일-사용한 연가일 1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433,860원에서( $2,522,5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6 = 433,860\text{원}$ )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350,360원을 제외한 83,500원을 지급함
- 연가일수가 23일인 공무원이 6.30일까지 연가를 10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2월31일까지 추가로 10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16.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16.8.1로 호봉승급하여 '16.12.31.기준 7급 11호봉임)
  - 7월 연가보상비 지급 시 6월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350,360원( $2,444,0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5 = 350,360\text{원}$ )을 지급함
  - 12월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 3일(23일-사용한 연가일 20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216,930원에서( $2,522,5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3 = 216,930\text{원}$ )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350,360원을 제외한 133,430원을 환수함

## 예 시

- 2월 1일에 신규임용, 교육훈련파견 20일, 병원치료를 위한 외출과 조퇴시간을 합하여 10시간, 병가 20일(의사의 진단서 첨부)인 경우 제외기간의 처리방법
  - 산정방법은 각 제외되는 기간을 합산한 후 개월수로 환산함. 즉,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1개월 이상이 아니므로 제외기간에 미산입하며, 병원치료를 위한 외출과 조퇴 시간을 모두 합쳐 8시간이면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 1일이 되고, 병가20일 중 6일까지는 일반병가 처리되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제외기간에 산입
  - 따라서 병가1일과 병가20일을 합한 21일과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인 1개월을 합산하면 2개월이므로 제외기간은 2개월이 됨
- 교육을 각각 간 경우(1월 4주교육, 4월 2주교육, 8월 2주교육) 제외기간 포함여부
  - 교육파견의 경우 1개월이상의 장기파견만 연가보상비 제외기간에 포함되므로, 4주교육(28일)은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각각의 교육 모두 1개월 미만인 경우이므로,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45일 장기교육을 간 경우 제외기간 계산방법
  - 45일 장기교육은 1개월 이상의 교육파견이므로, 제외기간에 포함되며, 1개월(30일) 외에 15일의 교육기간이 더 있으므로, 제외기간 계산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외기간을 2개월로 계산함

## 예 시

- 연가일수가 22일(법정연가일수 21일, 병가미사용 연가가산 1일)인 공무원이 '16.1.1.~6.30.까지 12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6.7.28.부터 정직처분 1개월을 받고, '16.11.14.~11.15.까지 2일의 연가를 추가로 사용(총 연가사용 일수는 14일)한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
  - 7월 연가보상비 지급 시 6월30일 현재 월봉금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에 대해 지급함
  - 22일(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 12일(정직처분 전 실시한 연가일수) = 10일(사용가능 연가일수)  
그러나, 정직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간만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직기간(1개월)이 본인의 연가가능일수(10일)를 초과함에 따라 향후 연가 실시 및 연가보상비 지급이 불가하며 정직 후 사용한 연가(2일)는 결근처리를 해야 하며 7월에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았으므로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6월30일 월봉금액 기준으로 환수함
-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16.6.30. 이전에 연가 11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6.9.1.~12.31.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한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16.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16.8.1.로 호봉승급하여 '16.12.31.기준 7급 11호봉임)
  - 7월 연가보상비 지급 시 6월30일 현재 월봉금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350,360원( $2,444,4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5 = 350,360\text{원}$ )을 지급함
  - 해당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21일에서 공제일수 7일[공제할 연가일수 = 휴직월(4개월)/12개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21일) = 7일]을 제하고 남은 14일이 사용가능한 연가일수이며, 14일 중 이미 실시한 연가 11일을 공제하고 남은 3일이 미사용연가일수임, 따라서 12월 연가보상비 지급일에는 12.31.현재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216,930원에서( $2,522,5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3 = 216,930\text{원}$ )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350,360원을 제외한 133,430원을 환수함
-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16.6.30일까지 연가 7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8월말까지 3일의 연가를 사용 후 '16.8.31.에 명예퇴직한 경우의 연가보상비 산정방법('16.6.30기준 5급 15호봉이었으며 '16.8.30.에도 월봉금액은 동일함)
  - 7월 연가보상비 지급 시 6월30일 현재 월봉금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519,890원( $3,627,2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5 = 519,890\text{원}$ )을 지급함
  - 퇴직자의 경우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하여 월할계산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므로 연가일수 21일에서 이미 사용한 연가일수 10일(7일+3일)을 제외한 미사용 연가일수 11일에 대하여 8월까지의 근무 개월수에 따라 월할계산( $11\text{일} \times (8\text{개월}/12\text{개월})$ )하면 8일(7.3일을 절상)이므로 연가보상일수는 8일이 되며, 퇴직일 전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831,830원( $3,627,2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8 = 831,830\text{원}$ )에서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519,890원을 제외한 311,940원을 지급함